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11. 22.(화) 17: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7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6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이 안건을 보고드리는 사유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현행은 조사 착수 이전에 사건의 개요, 관련법령 및 조사 일정계획 등을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은 조사처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되,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은 조사절차 종결 권한이 해당 국장에게 있으나 이를 사무처장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은 조사대상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의견진술 지정일 10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15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은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서를 피심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내용 또는 제재방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므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뿐만이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조사종결 권한인데 공정위원회의 경우에 사무처장이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처장이 무혐의 전결도 가능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사무처장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보면 보고 취지가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제재나 심결 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러나 우리가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 외에 세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입해야 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심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정위가 역사가 오래 돼서 공정위의 제도를 우리들이 많이 참고해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위원회가 먼저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립을 해서 오히려 다른 합의제 위원회나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위원회의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정위의 제도 중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시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고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는 사유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동의·철회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접근권한의 범위와 관련해서 기본방향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으로 하되, 캘린더 앱 등 소유자의 통제 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만 동작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소프트웨어와 연락처 앱 등 단말장치의 일부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기능의 범위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서 먼저 동영상, 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직접 단말장치에 저장한 경우, 그리고 위치정보, 통신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경우, 그리고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와 같이 개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정보, 촬영 등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한 기능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의방법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런타임 권한 부여 방식의 OS의 경우 앱 설치 또는 실행 과정에서 접근권한의 내용을 알리고, 실제로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선택하며, 다음에는 설치 시점 권한 부여 방식의 OS와 선택재 앱의 경우에는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여 설치 또는 최초의 실행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여부를 선택하며, 그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서 유사한 동의방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의 구분은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이용자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먼저 운영체제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소프트웨어 제

작·공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은 제조사업자에게는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단말기 장치에 설치해야 할 의무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에게는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방법 구현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3일 시행일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급하여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거나 또는 시행일 이후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됨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설치 시점 권한 부여 방식의 OS와 선택재 앱이 되어 있는데 설치 시점 권한 부여 방식을 취득한, 다시 말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미만 OS의 경우 필수적인 접근권한 뿐만 아니고 선택적 접근권한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선택권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개정안 내용은 향후에는 선택적인 접근권한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예?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필수적인...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현재는 필수적 접근권한, 선택적 접근권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금 많은 경우에 다 구분 없이 접근권한이라고 해서 쪽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선택해서 이 접근권한은 선택적인 접근권한으로 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지금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그때는 필수적인 접근권한만 나열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은 나열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5.0 이하 버전에서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단말기가 구형단말기인 경우에 계속 그 OS를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OS 기능에 맞게 한 번에 다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접근권한만 나열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동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선택적 접근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해당 규정 위반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 부칙에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급해서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필수적인 접근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접근권한을 다 동의를 받아놓았을 때 그런 경우에 갱신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 부분은 갱신하는 시점에는 필수적인 접근권한만 부여해서 기존에 동의가 선택적인 접근권한까지 포함한 그런 동의, 이미 선택한 이용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새로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갱신할 때 새로 받는 것으로, 필수적인 접근권한만 나열해서...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이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갱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의결한 이후에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행령 개정안은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제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는 것인데 이 제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규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그런 제목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과 시행령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사업자들이든 국민들이든 누구든지 이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입법예고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최종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해서 망법에서, 제가 다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체제사업자, OS사업자라든가 단말기 제조업체 그리고 앱 개발업체 내지는, 여기 이름부터가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쓰는 것과 이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내지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률과 시행령의 전체 내용을, 이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우리 이용자, 국민들은 무엇을, 아까 최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도 이름으로 이용자들,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지, 지금처럼 규정을 풀어서 쓴 내용만 가지고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해를 잘 못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제도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데 그때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스마트폰 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 시행일에 맞춰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능하면 이해가 쉽게 사례 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운영체제사업자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라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쓰는 용어를 예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OS 운영사업자들도 접근권한에 대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iOS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OS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동의 의무의 수범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자하는 자이고, 이 규정에서는 추가로 OS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제조사들이 이용자에게 대해서 접근권한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면 애플이나 삼성 이런 제조사 쪽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제조사가 자체개발한 앱을…, 제조사가 앱 개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OS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OS사업자의 경우 핸드폰, 스마트폰을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 전제 하에서 모든 기기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OS사업자에게는 보고안전 3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무를 기본적으로 접근권한과 관련해서 부과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정도 의무만 부과하고, 그 사업자 자체에 대해서는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앱 개발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OS 업그레이드할 때나 작동될 때 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서 약간 빗겨나 있네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 이 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사업자지요. 사업자인데...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추가로 OS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도록 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은 제가 농친, 사전협의 할 때까지 제가 농친 부분입니다. 요즘은 특히 OS사업자 업그레이드 시점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많은 정보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인데 OS사업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 본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앞의 안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은 원안 접수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향후 일정에 보니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시행을 내년 4월부터 한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 최성준 위원장

- 너무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행정절차가 길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가 의견을 낼 것 같지도 않은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예고가 요즘에는 한 40일 이상 되고 연말연시인 점을 고려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규제위의 심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4월이 약간 긴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내년 3월, 4월 이라면 저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그 전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나간 뒤에 한다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이 내용 플러스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전체 개선방안도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그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시행일이 언제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방통위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개선방안대로 시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결·공표 및 시행을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일에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다음에 결합상품의 경품과 관련된 금지행위 위반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가 조금 늦게 제출됐기 때문에 검토기간을 고려할 때 오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수 없어서 그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前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우 前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요지를 보면 "피고발인들이 집권을 남용하여 KBS사장 인사권 행사 과정에 관여하여 KBS이사회 이사들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지난 2014년 8월 이길영 前 KBS이사장의 사퇴와

이인호 KBS이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여부인 것 같습니다. 방송법 제46조 제1항 “KBS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KBS이사장 선임과정 개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 보면 이길영 前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KBS 새 노조 측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당시 사퇴 외압 논란이 있었던 이길영 前 KBS이사장의 사퇴 경위 정도는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공개된 회의에서 제가 고삼석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경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당시에 조대현 사장이 선임된 것이 결정적으로 사퇴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 의도와 달리 조대현 사장을 선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사퇴의 이유가 될 만한 것이었는지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말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와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35분 폐회 】